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3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김병기・윤종군・정동영

박 정ㆍ이개호ㆍ한준호

정성호 · 황운하 · 박상혁

임호선·장경태 의원(11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비밀유지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당화해왔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조력을 받는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해왔음.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권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비밀유지권리 등)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또는 제출을 요구하 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 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 2.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인 경우
 - 3.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6조의2제3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리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와 관련한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u>신 설></u>	제26조의2(비밀유지권리 등)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하여 변호사가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u> 설>

4. ~ 7. (생략)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 2.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인 경우
- 3.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 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 거로 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6조의2제3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4. ~ 7. (현행과 같음)